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APEC 2025 KOREA

보도시점 2025. 10. 1.(수) 11:00 / 10. 2.(목) 조간 배포 2025. 10. 1.(수) 09:00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사육허가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 농식품부,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맹견사육허가제 개선 방안 발표
-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26년 말까지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년여 간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맹견사육허가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맹견사육허가제도 개요 >

- **(목적)** 개물림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맹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내용)** 맹견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보험·중성화 등 요건을 갖추어 허가 신청, 시·도지사는 기질평가 후 공공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 결정
  * 허가대상 : 맹견 5종(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및 사고견(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된 개)
  * 기질평가 :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

맹견사육허가제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권역별 맹견사육허가 설명회를 개최(총 16회)하고 1:1 상담(컨설팅) 등을 통해 허가 신청을 독려해 왔다. 또한, 제도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맹견소유자,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및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맹견사육허가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첫째, 고령·질병 등 중성화수술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맹견의 경우, 중성화수술을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다만, 무분별한 맹견 개체수

증가 방지를 위해 중성화수술 면제 또는 유예 시 번식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단, 혈통 보존 등의 사유로 번식을 희망하는 경우, 맹견취급업허가를 통해 관리하에 번식을 허용한다.

둘째, 고령·질병 등으로 외출을 할 수 없거나, 사육환경의 특성으로 외출을 하지 않는 경우, 기질평가를 생략하고 사육장소에 한정된 사육 허가를 발급한다. 건강상의 이유로 외출을 할 수 없는 경우 평가의 실익이 낮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사육장소를 무단 이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셋째,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허가 전 후의 소유주의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한다.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사육 허가 이후 매년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던 것에서 사육 허가 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변경한다. 또한 사육허가 갱신제를 도입하여, 3년마다 안전관리 의무 준수 및 갱신 교육 의무 이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맹견 탈출 시 소유자로 하여금 즉시 관할 지자체 및 소방·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사육 허가를 완료한 맹견은 인식표에 허가 완료 여부를 표시하여 허가받은 맹견은 안전하게 외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개선 방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6년 말까지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해당 기간 동안에는 맹견사육허가 관련 단속이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지양하고 지자체와 함께 맹견사육허가제 전담반을 운영함으로써 제도 개선방안을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입마개·목줄 착용 등 맹견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준수사항은 지속적으로 홍보·점검하되, 중성화수술·기질평가 등 맹견사육허가 요건은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선택 적용될 수 있으므로 무허가사육자를 즉각 단속·처벌하기보다는 제도개선 방안 홍보를 통해 맹견 상태별로 허가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맹견은 단속을 통해 사육 음성화를 방지하고, 고령·질병 등의 중성화수술 및 기질평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맹견은 조속한 시일 내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도개선으로 중성화 또는 기질평가가 면제 또는 유예되는 맹견은 맹견사육허가제 점검반이 사육환경 등을 확인한 후 개정된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물림사고 예방이라는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맹견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허가 요건들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맹견 소유자분들이 사육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건강한 반려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맹견사육허가제 제도개선 방안(요약)
2. 맹견사육허가제 안내 포스터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동물복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연숙 (044-201-2611)
		담당자	연구관	조승열 (044-201-2626)
			사무관	원지선 (044-201-2620)
서울특별시	정원도시국 동물보호과	책임자	과 장	이미숙 (02-2133-7645)
		담당자	팀 장	박선덕 (02-2133-7655)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동물복지과	책임자	과 장	이연숙 (031-8030-4410)
		담당자	팀 장	안길호 (031-8030-4411)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본부 농축산과	책임자	과 장	박중우 (032-440-5024)
		담당자	팀 장	양하영 (032-440-4376)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국 반려동물과	책임자	과 장	남우진 (051-888-4850)
		담당자	팀 장	조헌호 (051-888-5003)
대구광역시	경제국 농산유통과	책임자	과 장	장현철 (053-803-3430)
		담당자	팀 장	서용열 (053-803-3420)
광주광역시	경제창업국 농업동물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배귀숙 (062-613-3950)
		담당자	팀 장	노미현 (062-613-3050)
대전광역시	녹지농생명국 농생명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성복 (042-270-3780)
		담당자	팀 장	이요안나 (042-270-3850)
울산광역시	경제산업실 농축산과	책임자	과 장	김상구 (052-229-2900)
		담당자	팀 장	박성웅 (052-229-2931)
세종 특별자치시	도농상생국 동물정책과	책임자	과 장	안병철 (044-300-7610)
		담당자	팀 장	손영민 (044-300-7621)
강원 특별자치도	농정국 동물방역과	책임자	과 장	안재완 (033-249-2720)
		담당자	팀 장	김정훈 (033-249-2670)
충청북도	농정국	책임자	과 장	엄주광 (043-220-3710)

	축수산과	담당자	팀 장	박성용 (043-220-3731)
충청남도	농축산국 축산과	책임자	과 장	이형구 (041-635-2540)
		담당자	팀 장	최태영 (041-635-4094)
전북 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 동물방역과	책임자	과 장	이재욱 (063-280-2640)
		담당자	팀 장	김지현 (063-280-2685)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 축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성진 (061-286-6510)
		담당자	팀 장	정혜영 (061-286-6530)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 동물방역과	책임자	과 장	김철순 (054-880-3440)
		담당자	팀 장	서희진 (054-880-3454)
경상남도	농정국 축산과	책임자	과 장	박동서 (055-211-6510)
		담당자	팀 장	지정민 (055-211-6542)
제주 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동물방역과	책임자	과 장	양순화 (064-710-2660)
		담당자	팀 장	김경호 (064-710-243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1 맹견사육허가제 제도개선 방안 요약

구 분		현 행	개 정
중성화 수술		▪ 월령 8개월 미만 시 유예 (8개월 경과 시 중성화수술 이행)	▪ 노령·질병 등 예외 사유 확대(단, 번식금지 의무 부과)
		▪ 맹견취급업 허가 획득 시 면제 (맹견생산·판매·수입업)	▪ 소규모 맹견취급업 (가칭 '브리더') 도입 검토
기질 평가		▪ 평가비용 소유자 부담 규정 (고시로 자부담 최대 25만원 한정)	▪ 맹견 5종에 한해 기질평가 비용 지원
		< 신 설 >	▪ 기질평가 유예·예외사유 마련 * 노령·질병 등 진단서 제출 시 * 외출하지 않는 맹견 평가 예외
		< 신 설 >	▪ 1:1 컨설팅 지원 및 행동지도 프로그램 개발·보급
기타	허가권자	▪ 맹견사육허가권자는 시·도지사	▪ 현장밀착형 제도 안내 등을 위해 시장·군수로 변경
	소유자 준수 사항	▪ 맹견사육허가(유효기간 X) 취득	▪ 3년마다 사육허가 갱신
		▪ 허가 후 매년 교육 이수(3시간)	▪ 허가 및 갱신 신청 전 이수
		< 신 설 >	▪ 외출 시 인식표에 사육허가 여부 표시 및 탈출 시 신고
	제재 조치	< 신 설 >	▪ 허가조건(번식 및 사육장소 이탈 금지) 위반 시 허가철회 및 처벌 (500만원 이하 벌금)

붙임2 맹견사육허가제 안내 포스터